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L3BL 단지 내 상가 공급공고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 L3BL**

■ **공급대상 : 단지내 상가 1개동, 4개 점포**

■ **공급면적 및 금액 (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위 : ㎡, 원, VAT포함)

구분	블록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내정가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근린생활시설 - 1	L3BL	101	26.8800	9.9200	36.8000	25.9578	59,892,000	117,370,909	11,737,091	189,000,000
		102	26.8800	9.9200	36.8000	25.9578	59,892,000	117,370,909	11,737,091	189,000,000
		103	26.8800	9.9200	36.8000	25.9578	59,892,000	117,370,909	11,737,091	189,000,000
		104	26.8800	9.9200	36.8000	25.9578	59,892,000	117,370,909	11,737,091	189,000,000

※ 아파트 세대수 : L3BL 318세대
※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입점예정 : L3BL : 2021년 12월**

- 사용승인 예정은 L3BL 2021년 12월이며, 입점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실제 입점일이 입점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은 실제 입점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점포별 시설용도 사용규정**

-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

시설 용도		권 장 용 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500㎡ 미만)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종교집회장(500㎡ 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놀이형시설 (5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의 시설은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닥면적합계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다음 표의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함

1. 일반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허용됨 3. 사행행위영업 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5.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실 6. 노래연습장 7. 무도학원 및 무도장 8.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9.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10.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11.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12. 기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분양 방법 :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

■ **공급 조건**

-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최고 입찰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음
- 1인당 입찰 점포수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개의 점포를 입찰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점포수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함
  (단, 1개 점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시 신청점포 모두 무효 처리)
- 낙찰자 선정은 내정가 이상 최고 금액을 입찰한 자로 함 (단,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 유찰 및 계약포기 점포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처리함
-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대금의 일부로 대체함
- 입찰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함
- 입찰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입찰함
- 낙찰 여부는 견본주택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함 (낙찰자는 개별통보함)

■ **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일 시	구 비 사 항	장 소
신청접수	2019.07.18(목) (12:00 ~ 15:00) ※ 15시 전 입찰보증금 입금 후 대기고객에 한하여 접수가능	① 입찰보증금 입금증 [입찰보증금 ₩5,000,000원] ② 입찰신청 관련 서류 (당사 양식) ③ 입찰보증금 환불신청서 **개인 신청자**: ④ 입찰자 신분증 및 도장 ⑤ 입찰자 환불통장 사본 (입찰접수당 1부) **법인 신청자**: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대표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⑥ 법인명의 환불통장 사본(입찰접수당 1부)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입찰자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용도 : 입찰 위임용)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당사 양식)	세종특별자치시 263-3번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 연락처 1800-0919
입찰 및 개찰	2019.07.18(목) 입찰 : 12:00 ~ 15:00 개찰 : 15:30 ~ 16:00	① 입찰신청서 (신청서 교부 - 입찰함) ② 입찰서 (당사 소정양식) ③ 입찰자 도장 ※ 입찰 건수에 따라 개찰일정이 다소 지연될수 있으며, 개찰은 입찰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함 (낙찰자는 개별 통보함)	
계 약	2019.07.19(금) (10:00 ~ 16:00)	① 입찰신청 접수증 ② 계약금 입금증 **개인 신청자**: ③ 신분증 ④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인감도장 **법인 신청자**: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통 ⑤ 대표본인 계약시 : 신분증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신분증, 도장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계약자 추가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용도 :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당사양식) ※ 상기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함(입찰 및 계약시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환 불	2019.07.29(월) (14:00 ~ 16:00)	※ 신청자 본인 계좌 무통장 입금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음)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입찰보증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방법
	₩ 5,000,000원	우리은행	364-089919-03-001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무통장 입금

※ 입금 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현금수납은 불가함.

■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 분	블록	계 약 금 10%	중도금 10%	잔 금 80%
		계약시	2019. 11. 15	입점시
납부계좌	L3BL	우리은행 1005-803-73304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의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유의사항**

- 입찰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음 (개인, 법인) • 입찰 참가 신청 접수자에 한해 입찰참여가 가능함
- 입찰금액은 호실당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총액이 아닌 평당가는 무효처리)
- 입금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장소에서 현금수납은 불가함
- 낙찰자 선정은 당사 내정가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단,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추첨방식은 당사가 결정함)
-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당사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함 • 입찰가격은 만원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만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입찰가격이 당사 내정가 미만일 경우 및 유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찰로 하며, 유찰된 점포는 당사에서 임의로 분양함
- 입찰일시 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밀봉하여 입찰함에 직접 투함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대금의 일부로 대체함
- 낙찰자는 상기 계약일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유찰)이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공동 유의사항**

계약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공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더라도 정산하지 않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주출입구 및 차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상가별 면적비율에 의해 대지지분이 분할되어 있으나 대지가 별도 구획된 것은 아니므로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의 차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시공중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설계변경(문열림 방향, 기둥 및 출입문 위치, 창호 사양 및 위치 변경 등 포함)은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상가를 인수하여야 하며, 상가 내부 일부 시설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조감도, 투시도, 아이소 등)는 시공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별 등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점포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과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최소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부가 되는 시설(전열대, 콘덕이, 간판, 창하수도, 가스배관, 냉난방시설, 전기시설(추가용량설치등) 등)은 입점자 부담임.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당사에 통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전액 부담함.
- 점포의 전기,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입찰 및 분양 전에 당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급수요금은 상기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상가 계약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내에서의 식음시설 영업 시 유지(기름)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막힘 현상 방지 및 악취 차단을 위해 주방용 배수 그리스트랩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및 입점자 과실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의 하자처리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냉내가 많은 식음시설 영업의 경우에는 입점자가 별도의 탈취설비를 설치하고 냄새에 따른 민원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해당 식음시설 입점자가 별도의 탈취설비 미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그 조치에 따른 비용은 입점자 부담임.
- 학원, 교습소 등의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의 최소 면적, 용도 등의 각종 등록,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이 없음.
- 계약자들은 입점 전에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점 후 상가의 제반관리를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입주자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또는 계약자가 하여야 함.
-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 관청에게 문의하여야 함.
-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이전에는 점포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상가의 인접 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함.
- 동일인 명의로 복수의 호수 입찰 후 유찰호수발생 시 유찰호수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낙찰호수의 계약금으로 자동으로 대체되며 정산내역은 낙찰자에게 별도 통보하며, 낙찰호수에 대한 계약포기시 해당호수에 대한 입찰보증금 당사 귀속 후 정산함
- 낙찰자는 소유권이전 완료 전에 공급회사의 승인 없이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장면적을 분할하여 다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 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내부 및 외부의 시설 또는 간판의 설치 시 공급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관계법규에 적합해야 하고, 상가의 미관을 감안하여 낙찰자의 비용으로 설치 하여야 함.
- 당 근린생활시설 업종구성은 입점자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하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공연장 등은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 300㎡미만, "바"목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은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 500㎡미만 까지만 가능하니 이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가의 간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도의 조례 및 허가관청의 승인을 준수하여야하고,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또는 지정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평면도, 모형, 현장상황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근생 화장실은 실외로 접근하여야 함. - 상가 주차장은 지상에 일부구간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함.
  - 상가용 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상가의 크린넥은 지정된 위치에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입구는 구분되어 설치됨.
  - 상가의 공급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상가는 방범셔터가 설치되지 않으며, 방범 시설은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 휀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가 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문주, 천전벤입기, D.A,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내부에 기둥 및 구조벽체 등으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로부터 위치, 거리 등의 여건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가별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전기사용량 확인은 상가 공용판넬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인근 위치에 실외기 설치 지정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 외에 설치로 인해 민원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실별 환기설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필요 시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각 근린생활시설는 인접해 있는 전면보도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출입구 및 접도부에 단차 및 계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될 예정으로 문주 위치를 확인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계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또는 기타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의 경우 계약자의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별 공용시설(화장실, 계단실, 복도 등)은 그 개획 및 구성이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생활권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상가외벽에 접한 호수는 실 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단, 등기면적은 동일함) - 단지 조경시설 및 나무식재, 단지 문주설치에 따른 상가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열재 설치, 벽체두께 변경등에 따라 분양면적 대비 실제 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및 편의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 실내에 기둥이 설치 될 수 있어 해당 점포는 사전 확인 필요.
  - 각 점포는 지정된 위치에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분쟁은 입점자 책임으로 해결 필요.
  -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가 제한되며, 단지 내 상가의 전체 용도별 면적 합계로 제한됨.
  -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G(액화천연가스)이며 기본 가스배관만 상가 외부 벽체 마감으로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상가 입점자가 부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급수시설은 각 점포별 수도미터기를 포함하여 20여 배관이 배수구 상부 천장 내 위치 예정이며, 이후 공사는 입점자가 개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온수(급탕)시설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점자가 개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은 배수(75Ø)가 각 점포별로 입구(바닥 배관 노출 시공)까지 공급되며, 점포 내 공사는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음.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입점이후 변경시도 동일)
  -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자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냉난방기의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차폐시설 설치 등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냉난방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비는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의한 규칙 제60조2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MMI등급)은 VII~0.216g임.

■ **사업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오롱글로벌(주)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동부건설(주)
사업자 등록번호	307-82-08006	120-81-50012	201-81-45685	120-81-50012	201-81-45685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263-3번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 / 연락처 1800-0919**

■ **본 분양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

문의 전화 **1800-0919**

시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시공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